

## 용인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

제정	2011. 4. 15	조례 제1145호
일부개정	2012. 12. 11	조례 제1264호(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)
일부개정	2014. 10. 6	조례 제1386호(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)
일부개정	2015. 4. 13	조례 제1449호
일부개정	2017. 10. 2	조례 제1713호(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)
일부개정	2017. 11. 6	조례 제1727호
일부개정	2019. 5. 9	조례 제1926호
일부개정	2020. 5. 15	조례 제2018호(민간위탁 관리 조례)
일부개정	2023. 12. 8	조례 제2475호

### 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」에 따라 용인시에 거주하는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권과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하는 인간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5. 4. 13>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따른다. <개정 2015. 4. 13>

제3조(적용범위)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하여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 이외에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 <개정 2015. 4. 13>

제4조(시장의 책무) 용인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편의 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,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 성실히 수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. 4. 13>

### 제2장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위원회

제5조(위원회 설치 및 기능) ①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사업을

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용인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. 4. 13>

1. 삭제 <2015. 4. 13>
2. 삭제 <2015. 4. 13>
3. 삭제 <2015. 4. 13>
4. 삭제 <2015. 4. 13>
5. 삭제 <2015. 4. 13>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. <신설 2015. 4. 13>

1.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기본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
2. 저상버스의 운영과 도입에 관한 사항
3.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
4. 이동지원센터 설치·운영 등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

제6조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 구성은 「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를 따른다. <개정 2015. 4. 13, 2017. 11. 6, 2023. 12. 8>

② 위원장은 제2부시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교통 관련 업무 국·소장이 된다. <개정 2014. 10. 6, 2017. 10. 2>

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 <개정 2015. 4. 13>

1. 장애인·노인·여성·아동 관련 업무 담당과장
2. 도로·대중교통 관련 업무 담당과장
3. 용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

4. 지체장애인·신체장애인·시각장애인·청각장애인·노인·여성단체 등  
각급 단체에서 추천하는 경륜이 있는 사람

5. 교통약자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

⑤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, 결원이 생길 경우, 제4항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충원한다. <개정 2015. 4. 13, 2017. 11. 6>

⑥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. <신설 2017. 11. 6>

⑦ 위원회의 간사는 교통약자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. <개정 2017. 11. 6>

제7조(위원회의 운영)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,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,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한다. <개정 2015. 4. 13, 2019. 5. 9>

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·관리하여야 한다.

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제출의 요구 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 <개정 2019. 5. 9>

⑤ 그 밖의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 <개정 2015. 4. 13>

제8조(위원의 해촉)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(解囑)할 수 있다. <개정 2015. 4. 13, 2019. 5. 9>

1.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

2. 위원이 심의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 등을 누설하거나 민원을 야기시키는 경우

3. 장기적인 질병치료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

4. 위원 스스로가 품위를 해치는 행위 등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

[제목개정 2019. 5. 9]

제8조의2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등)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·의결에서 제척된다.

1.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
2.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이 해당 심의·의결의 대상인 경우
3.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인정되는 경우

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.

[본조신설 2015. 4. 13]

### 제3장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

제9조(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) ① 시장은 5년 단위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②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는 법 제6조제2항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.

1. 이동지원센터의 설립과 운영계획
2. 특별교통수단의 제공과 운영계획
3. 여객시설의 조사와 개선 계획
4. 교통약자의 이동 실태에 대한 조사
5.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이동편의정보 제공 및 개선계획
6. 저상버스 도입계획 및 운영계획,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에 대한 교육계획
7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시장은 연차별 시행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을 점검하고, 개선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시정·개선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 11. 6>

## 제4장 저상버스

제10조(저상버스 구입지원) 시장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노선버스운송사업자가 저상버스를 구입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차량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[전문개정 2015. 4. 13]

제11조(인센티브) 시장은 경기도지사가 「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18조 및 「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」 제19조에 따라 경영 및 서비스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노선버스운송사업체의 저상버스 도입 및 운행대수에 따라 차등적 재정지원을 실시한다. <개정 2017. 11. 6>

[전문개정 2015. 4. 13]

제12조(운행점검 및 시정요구 등) ① 시장은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75조와 「경기도 사무위임 규칙」 제2조에 따라 노선버스운송사업자가 정상적으로 저상버스를 운행하는지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, 이에 따른 개선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시정·개선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. 4. 13>

② 제1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할 경우에는 노선버스운송사업자는 1개월 이내에 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하며, 시장은 개선계획이 제출된 후 1년 동안의 개선계획 이행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. 4. 13>

③ 제2항에 따른 개선계획을 이행하는지 여부를 점검한 결과, 개선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점검결과를 경기도지사에게 제출하여 해당 노선버스운송사업자의 버스운송업체 인센티브 지원 등을 제한하도록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. 4. 13, 2017. 11. 6>

제5장 특별교통수단 및 교통약자의 이동지원 <개정 2019. 5. 9>

제13조(특별교통수단의 도입) 시장은 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」 제5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운행 대수 확보 및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. 4. 13, 2017. 11. 6>

제14조(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 및 이용제한) 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5. 4. 13, 2019. 5. 9, 2023. 12. 8>

1. 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」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(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」 제28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에 한한다)으로서 버스·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
2. 삭제 <2023. 12. 8>
3. 제1호에 해당하는 교통약자에 준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
  - 가. 사고·질병 등 일시적 장애로 인한 휠체어 이용자
  - 나. 그 외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 중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4.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

② 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할 때에는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교통약자에게 시 관할구역 내 거주 여부에 따른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. <개정 2015. 4. 13, 2023. 12. 8>

③ 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. <개정 2015. 4. 13>

제15조(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등) ① 특별교통수단은 1년 365일,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운행대수는 이용수요를 고려하여 이용시간대별로 조정할 수 있다. <개정 2015. 4. 13>

② 삭제 <2023. 12. 8>

③ 특별교통수단의 운전자는 이용자가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운행하고 승·하차를 도와주어야 한다.

④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」 제3조

제2호다목에 따른 일반택시 중 중형택시 요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로 한다. <개정 2015. 4. 13>

⑤ 시장은 제4항의 범위에서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을 정하여 공보 및 용인시 홈페이지에 고시한다. 요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 <개정 2015. 4. 13>

⑥ 삭제 <2023. 12. 8>

⑦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지역은 수도권(경기, 서울, 인천)으로 한다. 다만, 운행대수 및 운행여건을 고려하여 운행지역을 조정할 수 있다. <신설 2015. 4. 13>

⑧ 시장은 제15조의2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제13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과 함께 운행하는 경우에는 특별교통수단을 휠체어 이용자가 우선하여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. <신설 2019. 5. 9>

제15조의2(교통약자의 이동지원) ① 시장은 법 제16조의2에 따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「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」 제13조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외 자동차를 지정하여 운행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23. 12. 8>

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19. 5. 9]

제15조의3(준용)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의 관리·운영 및 이용요금에 대해서는 제15조를 준용한다.

[본조신설 2019. 5. 9]

## 제6장 이동지원센터

제16조(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) ① 시장은 법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법 제16조의2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와 특별교통수단(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장 및 제7장에서 같다)을 운행하는 사람을 통신수단 등을 통해 연결하여 주

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. 4. 13, 2019. 5. 9, 2023. 12. 8>

② 이동지원센터는 1년 365일,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. <개정 2015. 4. 13>

③ 시장은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·운영을 위하여 특별교통수단의 관리와 운행,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사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·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 <개정 2015. 4. 13>

1. 용인도시공사

2.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

3.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설립 조합

④ 시장은 이동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17조(이동지원센터의 사무위탁) 제16조제3항에 따라 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의 선정 및 수탁사무의 처리 등은 「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」를 준용한다. <개정 2020. 5. 15>

[본조신설 2015. 4. 13]

제18조(수탁자의 의무) ① 제16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(이하 “수탁자”라 한다)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.

② 수탁자는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등 위탁시설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. 4. 13>

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,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. 4. 13>

[중전 제17조에서 이동 <2015. 4. 13> ]

제19조(이동지원센터의 기능) 이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<개정 2015. 4. 13, 2023. 12. 8>

1. 삭제 <2023. 12. 8>

2. 특별교통수단 운행 및 차량 관리

3. 특별교통수단 이용자에 대한 자격심사 및 확인



4.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
  5.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및 관련자에 대한 안내·상담 및 교육
  6.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종합정보망의 구축 및 홍보, 간행물의 발간 및 보급 등
  7.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 확보 및 접수, 배차 및 운영·관리
  8. 그 밖에 이동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
- [종전 제18조에서 이동 <2015. 4. 13> ]

## 제7장 광역이동지원 <신설 2015. 4. 13>

제20조(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 협조) 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의 광역적 이용을 위해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 <개정 2023. 12. 8>

[전문개정 2015. 4. 13]

[제목개정 2023. 12. 8]

제21조 삭제 <2023. 12. 8>

제22조 삭제 <2023. 12. 8>

## 제8장 교육 등 <신설 2015. 4. 13>

제23조(교육) ①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신규 및 직무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②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에 새로 채용된 종사자는 시장이 정하는 신규교육과정을 수료한 후 업무를 시작하여야 하며, 다음 해부터는 매년 직무교육을 수료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은 경기도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.

[본조신설 2015. 4. 13]

제24조(예산의 확보)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, 이를 예산편성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.

[본조신설 2015. 4. 13]

제25조 삭제 <2019. 5. 9>

제26조 삭제 <2023. 12. 8>

##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2. 12. 11 조례 제1264호,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13. 1. 1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및 제3조 생략

제4조(다른 조례의 개정) 이 조례 시행 전의 다른 조례에서 별표와 같이 「용인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」를 인용한 조항은 「용인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를 인용한 것으로 개정한다.

별표 생략.

부칙 <2014. 10. 6 조례 제1386호,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부터 ⑧ 까지 생략

⑨ 「용인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」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2항 중 “건설교통국장”을 “교통 관련 업무 국·소장”으로 한다.

⑩ 부터 ⑬ 까지 생략

부칙 <2015. 4. 13 조례 제1449호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자는 제 16조 및 제1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것으로 본다.

부칙 <2017. 10. 2 조례 제1713호,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부터 ⑬ 까지 생략

⑭ 「용인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」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2항 중 “부시장”을 “제2부시장”으로 한다.

⑮ 부터 ⑳ 까지 생략

부칙 <2017. 11. 6 조례 제1727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9. 5. 9 조례 제1926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1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20. 5. 15 조례 제2018호, 민간위탁 관리 조례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생략

제3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부터 ④ 까지 생략

⑤ 용인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 중 “「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”를 “「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」”로 한다.

⑥ 부터 ⑨ 까지 생략

부칙 <2023. 12. 8 조례 제2475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